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12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 현 · 최민희 · 김 윤
이재강 · 박지원 · 권향엽
정진욱 · 이성윤 · 한민수
이해민 · 황정아 · 이주희
임미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2013년 (구)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및 방송미디어통신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역센터·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⑤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방송미디어광고의 판매대행
6.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미디어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방송미디어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미디어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8.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9. 방송미디어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남북협력을 포함한다)·해외 진출 및 해외홍보 지원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 및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12.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13. 방송미디어통신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14. 방송미디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15.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시청자와 이용자의 보호 및 권익제고 지원
16. 방송미디어통신 콘텐츠의 제작·유통·활용 및 수출 지원

17.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8.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정책 및 제도의 연구·기획
19.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동향 및 통계의 조사·분석
20.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미디어통신 소외 방지를 위한 사업
21. 방송재난 예방 및 재난방송 송출·실시 등을 위한 지원
22.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지원
23. 시청자 및 이용자와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지원
24. 방송미디어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연구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21305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에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한다) 제44조의17에 따른 투명성센터의 운영
26.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원
27.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사업
28.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29. 방송미디어 기업·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30.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31.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3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3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4.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6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⑧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운

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 한다)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등의 명칭은 진흥원의 명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일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등이 한 행위 또는 재단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재단등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재단등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 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①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6.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7.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9.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10.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을 진흥원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제1항에 따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이사회 등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이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명의를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⑧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으로 한다.

③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3조의2(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p> <p><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u></p> <p><u>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u></p> <p><u>④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역센터·사무소·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u></p> <p><u>⑤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p> <p><u>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p> <p><u>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u></p> <p><u>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u></p>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5. 방송미디어광고의 판매대행
6.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미디어 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방송미디어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미디어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8.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9. 방송미디어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남북협력을 포함한다)·해외진출 및 해외홍보 지원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고충의 상담·

처리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업무 및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12.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13. 방송미디어통신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14. 방송미디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15.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시청자와 이용자의 보호 및 권익제고 지원
16. 방송미디어통신 콘텐츠의 제작·유통·활용 및 수출 지원
17.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8.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정책 및 제도의 연구·기획

19.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동향 및 통계의 조사·분석
20.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미디어통신 소외 방지를 위한 사업
21. 방송재난 예방 및 재난방송 송출·실시 등을 위한 지원
22.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지원
23. 시청자 및 이용자와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지원
24. 방송미디어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연구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에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한다) 제44조의17에 따른 투명성센터의 운영
26.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원
27.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사업

28.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

29. 방송미디어 기업·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30.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31. 방송미디어 및 이용자 보호 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3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3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4.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6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따
른 수입금

⑧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
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
영 및 제6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⑩ 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방
송미디어통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
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

립·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